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. 6. 5 ----------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6. 6. 5

다. 상 정 일 자 : 2006. 6. 15

(제13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, 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기획감사실장 황해룡)

가. 제안사유

우리구에서 입안하는 행정상 입법안을 입법예고토록 하고, 입법예고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며,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신·구조문대비표 및 개정문을 함께 예고토록 하여 주민들이 입법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폭 넓은 의견제출 및 입법과정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함

나. 주요골자

○ 입법예고의 대상을 종전에는 구민의 권리·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만 입법예고 하던 것을, 원칙적으로 모든 자치법규에 대해 입법예고 하고, 예고 후 중요내용의 변경이나 추가시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함(안 제3조)

○ 입법예고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신·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 제·개정문의 전문을 입법예고토록 함(안 제4조제1항)

○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한 것을 구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(안 제5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, 「법제업무운영규정」

○ 입법예고 : 2006. 5. 25 ~ 6. 1(7일간) ▷ 제출의견 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○ 본 조례 개정건은 주민들이 입법안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, 다양한 의견제출 등 입법과정에 있어 참여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 구민의 권리·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만 입법예고 하던 것을, 모든 자치법규에 대해 예고하도록 하고, 입법예고 후 변경사항이나 추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였으며

○ 입법예고문을 구보에만 게재토록 한 규정을 구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시에는 신·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 제정·개정문의 전문을 예고하는 등 대구민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 됨.

5. 질의답변요지 : 생 략

6. 토 론 요 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